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라 한다), 경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라 한다), 문화창조융합센터(이하 “융합센터”라 한다)는 창조경제의 기본 이념 하에 문화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핵심 축으로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문화산업을 통해 창조경제가 우리경제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 협력한다.

1.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총괄·기획 기능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내 전담운영본부인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담당한다.
2. 문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을 지원하며,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K-Culture Valley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
3. 경기도는 K-Culture Valley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4. 콘진원은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들을 지원한다.
5. 융합센터는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연계 사업을 지원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본 협약에 규정된 협력 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보안) 각 당사자는 각각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상호 지득한 비밀과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외부에 발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발효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 종료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당사자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2015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덕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 동 호

경 기 도
도지사 남 경 필

김종덕

김동호

남경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 성 각

송성각

문화창조융합센터
센터장 신 형 관

신형관